

고형연료제품의 수입·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

(제20조의11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수입·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수입·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입·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(금지명령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수입·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의 기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수입·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	법 제25조의10 제2항			
1)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·제2호 또는 제4호·제5호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		경고	금지명령 1개월	금지명령 3개월
2) 법 제25조의5제1항제3호		경 고	개선명령	개선명령

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			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